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9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범위 확대 (이정문의원안) ...	3

I. 개요

1.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0. 2.
- (3) 회 부 일 : 2024.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채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채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44조제3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범위 확대 (이정문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 * 채무면제익: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 ○ 적용대상: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익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일부 면제익 ③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른 채무면제익 ④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채무면제익 ○ 과세특례 준용 대상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채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받는 채무면제익 ○ 과세특례: 4년 거치 + 3년 균분 익금산입 (과세이연) ○ 적용기한: 2026. 12. 31.	□ 과세특례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과세특례 준용 대상 - (현행과 같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받는 채무면제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정문의원안 2024. 10. 2. 발의(의안번호 4490)

□ 개정안은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기업채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받는 채무면제익을 추가하려는 것임.

□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44조)는 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채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채결기업이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임.¹⁾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채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채무안정 PEF’)는 채무구조 개선이

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채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²⁾임.

기업재무안정 PEF는 부실징후기업, 회생신청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해 재산을 투자 및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PEF로서,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채권, NPL(부실채권), 부동산 등의 인수 또는 대출채권 매입에 투자하여야 함.³⁾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 시 기업의 재무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6월에 3년 한시법으로 기업재무안정 PEF가 도입되고, 2013년 8월에 3년 한시법으로 재도입되었음. 이후,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

2)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말에 상시화되었음.

기업재무안정 PEF는 과거 일반 PEF와 달리 경영권 참여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기업에 대출이 허용되는 등 운용에 있어 허용폭이 비교적 넓게 적용되었음. 기업재무안정 PEF는 PEF의 경영권 참여 없이 투자가 가능하여,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음.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PEF 운용방식이 일원화되어 일반 PEF도 경영권 참여의무 규제가 폐지되고, 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었음.

또한, 기업재무안정 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세제상 혜택이 있음.⁴⁾

기관전용 PEF⁵⁾ 중 기업재무안정 PEF는 2017년 말 51개에서 2023년 말 69개로 증가했으며, 전체 기관전용 PEF 1,126개 중 6.1%를 차지하고 있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5) 2021년 PEF 운용방식 일원화에 따른 PEF 분류체계 중 기관전용 PEF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고 일반·개인 투자는 불가능한 PEF임. 일반 PEF에 비해 기관전용 PEF는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됨.

[기관전용 PEF 현황]

(단위: 개)

구분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합계	444	580	721	847	1,050	1,098	1126
일반	378	487	597	686	853	914	948
재무 안정	51	53	63	71	76	69	69
창업벤처	9	35	56	87	118	113	109
기타	6	5	5	3	3	2	

자료: 금융감독원, '2023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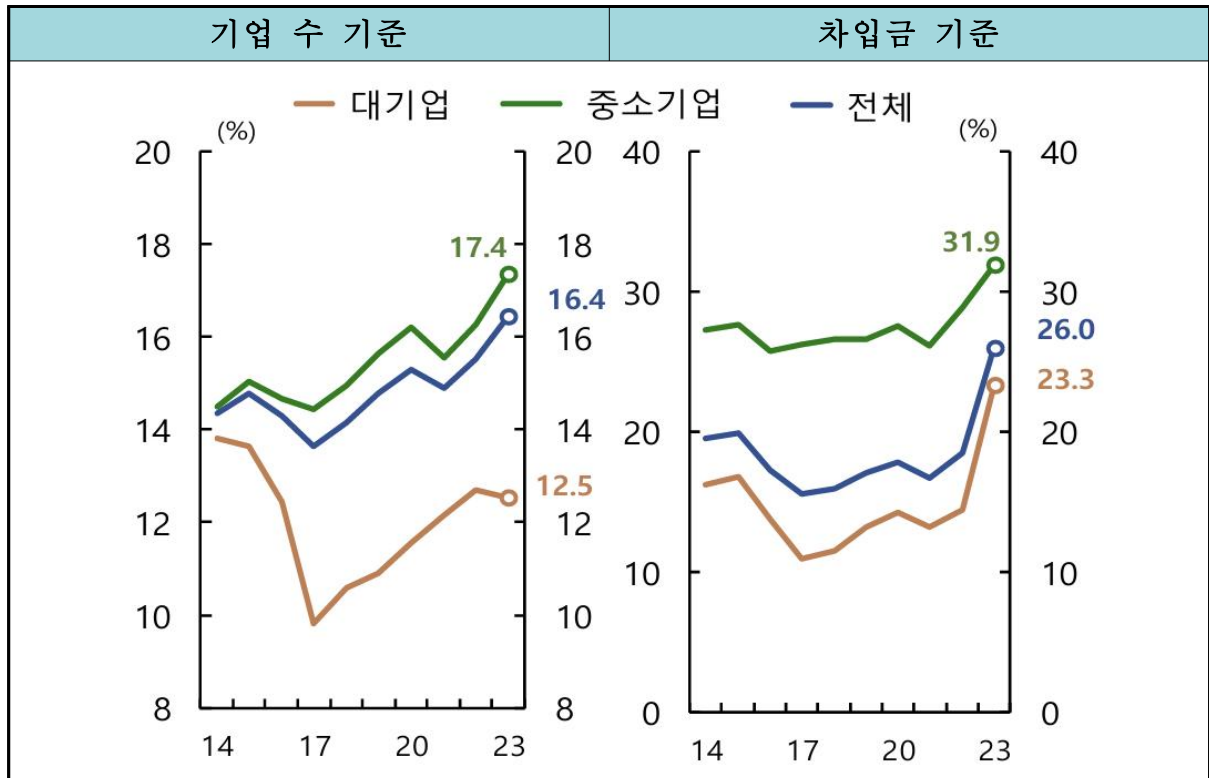
첫째,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PEF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안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재무구조개선 기업이 채무면제익에 대해 일시에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생기면, 기업재무안정 PEF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재무구조개선 노력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

2023년 말 기준 전체 외감기업에서 한계기업⁶⁾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각각 16.4%, 26.0%를 기록하는 등 한계기업의 비중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6)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 기업을 의미함.

[연도별 한계기업 비중]



주) 각 연도별 분석대상 외감기업 수 및 기업 보유 차입금 대비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따라서,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PEF의 수익창출과 한계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 등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음.

둘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받는 채무면제익은 동 과세특례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재무안정

PEF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받는 채무면제익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약정채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채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채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임.⁷⁾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약정채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약정채결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의 방법으로 약정채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업재무안정 PEF와 실질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활용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제도는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약정채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채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채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채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조세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됨.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PEF 운용방식이 일원화되어 과거 기업재무안정 PEF에
만 허용되던 대출 등 다양한 운용방식이 다른 PEF에도 허용되도
록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PEF이 당초 갖고 있던 혜
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약화되었음.

둘째, 앞서도 언급했지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을 상실하였
고 과거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현재 모두 청산된 상태
이므로, 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받는 채무면제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제공해주는 과세특례(법 제44
조제2항)는 사실상 사문화된 특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2000년에 6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
법으로 제정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더 이상 법의 효력을 연장하
지 않았음.⁸⁾

셋째, 기업재무안정 PEF는 투자대상 기업이 현행법상 채무면제익
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제6275호, 2000. 10. 23. 제정, 2000. 10. 23. 시행] 부칙
제2조 (유효기간) ①이 법은 공포후 6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는 당해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이 실효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등 법적절차를 거친 기업이 적용대상임.

반면, 기업채무안정 PEF는 부실징후기업,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파산을 신청한 기업 등 구조조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및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